

# 2017년 임금협약

2017년 12월 14일

서울특별시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 전 문

서울특별시(이하 '서울시'라 한다)와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이하 '노동조합'이라 한다. 서울지역공무직지부 포함)은 헌법과 노동관계법의 기본정신에 따라 상호 존중하고 노동조건과 생활조건을 유지·개선함으로써 조합원의 정치·경제·사회·문화적 지위를 향상하고자 이 협약을 체결하며 상호 성실히 준수·이행할 것을 약속한다.

제1조(적용범위) 본 임금협약의 적용범위는 공무원에 한하여 적용한다.

제2조(임금저하 불가) '서울시'는 조합원의 배치전환, 임금의 지불형태 변경, 예산축소, 생산성 저하, 경영부실 등을 이유로 기 지급하고 있는 임금총액을 저하시킬 수 없다.

제3조(임금체계 개편) ① 2017년 임금 인상률은 봉급표상 지급총액기준의 3.5%로 한다. 단, 시설청소원, 시설경비원, 대민종사원 공무원의 1호봉에서 10호봉까지 3.84%, 일반종사원, 환경정비원, 도로보수원, 시설정비원 공무원 1호봉만 3.84%로 한다.

② 일반종사원, 환경정비원, 도로보수원, 시설정비원 공무원의 임금은 봉급표(붙임1)에 따른다

③ 시설청소원, 시설경비원, 대민종사원의 임금은 봉급표(붙임2)의 금액으로 한다.

제4조(임금의 구성항목) 임금협약 제 3조의 봉급표상 월급여에는 기본급 및 식대가 포함된 것으로 한다.

제5조(호봉승급) ① '서울시'는 조합원에게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등 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공무원 채용시 군경력 가산방식을 준용한다. 다만, 병역법에 의한 군의 복무기간을 근속년수에 가산하되, 군복무 경력은 최고 3년 범위 내 기간으로 한다.

② 호봉승급일은 임용 월1일에 승급한다.

③ 전환자 및 신규채용자는 33호봉을 최고호봉으로 한다.(시설청소원은 20호봉을 최고호봉으로 한다)

**제6조(급여지급)** ① 공무원의 봉급은 붙임 1, 붙임1-1, 붙임2 의 공무원 봉급표를 2017년 1월부터 적용하여 시행한다.

② '서울시'는 공무원에게 봉급표상 지급총액 중 13분의 1에 대한 금액을 매월 지급한다.

③ '서울시'는 공무원에게 인상소급금과 인상임금을 2017년 12월에 지급한다.

**제7조(명절휴가비)** ① '서울시'는 조합원에게 명절휴가비를 봉급표상 지급총액 중 13분의 1에 대한 금액을 설과 추석에 동일하게 나누어 지급한다.

② 입사, 복직, 휴직, 퇴직하는 명절휴가비는 일할계산한다.

③ ②항의 일할계산은 설날휴가비는 1~6월 기준으로 하고 추석휴가비는 7~12월 기준으로 한다.

**제8조(제수당)** 조합원의 제수당은 가족수당, 자녀학비보조수당, 기능장려수당, 특수지근무수당, 선임수당을 지급한다.

① 가족수당은 단체협약 지급기준에 따른다.

② 자녀학비 보조수당은 중고등학교에 취학자녀가있는 자에게 공무원과 동일하게 자녀학비 보조수당을 지급한다.

③ 기능장려수당은 조합원의 직무능력 및 전문성 향상을 위하여 붙임3(해당 자격종의 종류)에 규정한 자격증을 소지하고, 해당업무에 종사하는 조합원에게 1인당 월 20,000원을 지급한다.(1개 자격증만 수당지급을 인정한다)

④ 특수지근무수당은 서울특별시 공무원 수당지급조례에 의거 지급한다.

⑤ 선임수당은 붙임4(선임수당 지급 구분표)에 따라 선임된 공무원에게 월 30,000원을 지급한다.(단, 중복 선임된 경우 1개 선임수당만 지급한다)

**제9조(효력의 연장)** 본 협약의 유효기간이 만료되었더라도 새로운 협약이 체결되기 전까지는 기 협약된 임금을 계속 지급한다.

**제10조(시행)** 본 협약이 체결된 날로부터 시행하되, 임금은 2017.1월부터 소급적용 한다.

## 부속합의서

1. 조합원이 금융기관에서 급여와 퇴직금 등을 담보로 저금리로 학자금, 주택마련을 위한 대출을 받고자 할 때 '서울시'는 용자에 필요한 제반 증명 서류의 제출에 협조한다.
2. 매년 생일을 맞이한 자에게 포상금 20,000원(상품권 가능)을 지급한다.
3. 상근자 초과근무수당은 단체협약 35조②항에 의거 예산편성기준으로만 지급한다.
4. 공무원의 정년은 만60세가 되는해의 12월말로 한다.
5. 2018년에는 현장관리수당 세부지급기준 관련하여 합의한다.

2017. 12. 14.

서울특별시와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서울지역공무직지부 포함)은 임금협약 본 규정 및 부속합의서와 같이 합의하고 서명 날인한다.

서울특별시장      박 원 순 (인)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위원장      조 상 수 (인)

인 사 과 장      김 권 기 (인)      서울지역공무직지부 지부장 직무대행      손 주 택 (인)

〈붙임 1〉

① 공무원 봉급표(일반종사원, 환경정비원, 도로보수원, 시설정비원)

(단위 : 원)

호봉	월급여 총액 (1/12 금액 매월지급)	월급여	명절휴가비 (설, 추석 50% 지급)	지급총액
1	19,993,080	1,666,090	1,666,090	21,659,170
2	21,200,400	1,766,700	1,766,700	22,967,100
3	22,477,080	1,873,090	1,873,090	24,350,170
4	23,753,280	1,979,440	1,979,440	25,732,720
5	25,026,000	2,085,500	2,085,500	27,111,500
6	26,276,040	2,189,670	2,189,670	28,465,710
7	27,550,680	2,295,890	2,295,890	29,846,570
8	28,823,640	2,401,970	2,401,970	31,225,610
9	30,098,160	2,508,180	2,508,180	32,606,340
10	31,372,440	2,614,370	2,614,370	33,986,810
11	32,645,520	2,720,460	2,720,460	35,365,980
12	33,919,800	2,826,650	2,826,650	36,746,450
13	34,529,760	2,877,480	2,877,480	37,407,240
14	35,139,720	2,928,310	2,928,310	38,068,030
15	35,749,440	2,979,120	2,979,120	38,728,560
16	36,009,720	3,000,810	3,000,810	39,010,530
17	36,614,880	3,051,240	3,051,240	39,666,120
18	37,217,880	3,101,490	3,101,490	40,319,370
19	37,822,920	3,151,910	3,151,910	40,974,830
20	38,425,800	3,202,150	3,202,150	41,627,950
21	39,029,760	3,252,480	3,252,480	42,282,240
22	39,634,440	3,302,870	3,302,870	42,937,310
23	40,237,800	3,353,150	3,353,150	43,590,950
24	40,841,760	3,403,480	3,403,480	44,245,240
25	41,445,960	3,453,830	3,453,830	44,899,790
26	42,049,800	3,504,150	3,504,150	45,553,950
27	42,653,640	3,554,470	3,554,470	46,208,110
28	43,257,840	3,604,820	3,604,820	46,862,660
29	43,861,920	3,655,160	3,655,160	47,517,080
30	44,468,160	3,705,680	3,705,680	48,173,840
31	45,069,720	3,755,810	3,755,810	48,825,530
32	45,673,800	3,806,150	3,806,150	49,479,950
33	46,278,720	3,856,560	3,856,560	50,135,280

〈붙임 1-1〉

② 공무원 봉급표 (2012.5.1.자로 상용직에서 공무원으로 전환된 자)

( 단위 : 원 )

호봉	월급여 총액 (1/12 금액 매월지급)	월급여	명절휴가비 (설, 추석 50% 지급)	지급총액
초1	46,817,400	3,901,450	3,901,450	50,718,850
초2	47,435,040	3,952,920	3,952,920	51,387,960
초3	48,054,000	4,004,500	4,004,500	52,058,500
초4	48,673,800	4,056,150	4,056,150	52,729,950
초5	49,292,640	4,107,720	4,107,720	53,400,360
초6	49,911,600	4,159,300	4,159,300	54,070,900
초7	50,530,320	4,210,860	4,210,860	54,741,180
초8	51,150,720	4,262,560	4,262,560	55,413,280
초9	51,758,400	4,313,200	4,313,200	56,071,600
초10	52,387,920	4,365,660	4,365,660	56,753,580
초11	53,006,640	4,417,220	4,417,220	57,423,860

〈붙임 2〉

③ 공무원 봉급표 (시설청소원, 시설경비원, 대민종사원)

( 단위 : 원 )

호봉	월급여 총액 (1/12 금액 매월지급)	월급여	명절휴가비 (설, 추석 50%씩 지급)	지급총액
1	19,993,080	1,666,090	1,666,090	21,659,170
2	20,189,760	1,682,480	1,682,480	21,872,240
3	20,387,160	1,698,930	1,698,930	22,086,090
4	20,584,680	1,715,390	1,715,390	22,300,070
5	20,782,080	1,731,840	1,731,840	22,513,920
6	20,979,600	1,748,300	1,748,300	22,727,900
7	21,176,880	1,764,740	1,764,740	22,941,620
8	21,374,520	1,781,210	1,781,210	23,155,730
9	21,571,920	1,797,660	1,797,660	23,369,580
10	21,769,440	1,814,120	1,814,120	23,583,560
11	21,894,960	1,824,580	1,824,580	23,719,540
12	22,091,760	1,840,980	1,840,980	23,932,740
13	22,288,440	1,857,370	1,857,370	24,145,810
14	22,485,360	1,873,780	1,873,780	24,359,140
15	22,682,160	1,890,180	1,890,180	24,572,340
16	22,780,560	1,898,380	1,898,380	24,678,940
17	22,878,960	1,906,580	1,906,580	24,785,540
18	22,977,480	1,914,790	1,914,790	24,892,270
19	23,075,760	1,922,980	1,922,980	24,998,740
20	23,174,160	1,931,180	1,931,180	25,105,340

※ 시설청소원, 시설경비원, 대민종사원(운전, 주차관리) 고령자 적합업무로 만50세 이상 채용

〈붙임 3〉

□ 기능장려수당 해당 자격증의 종류

직 종	자격증 종류	비고
도로보수원	(아스콘)포장기능사 건설재료시험(기사, 산업기사) 토목기사(기술사), 대형면허 산업안전기사, 로더운전기능사 산업안전지도사(노동부), 굴삭기운전기능사	
환경정비원	산림기사(기능사, 산업기사, 기술사) 조경기사(기능사, 산업기사, 기술사) 생태복원기사(기능사, 산업기사, 기술사) 임업종묘기사(기능사, 산업기사) 식물보호기사(기능사, 산업기사) 원예, 화훼장식, 문화재수리 기능사(조경사), 대형운전면허, 건설재료시험기능사(기능사, 산업기사) 토목기사(기술사), 굴삭기운전기능사, 로더운전기능사, 종자기능사, 조경산림기능사 산업안전기사, 산업안전지도사(노동부) 전기기기(기능사, 기사, 기술사) 전기공사(기능사, 기사, 기술사) 항해사 소형선박조정면허(한정면허 포함) 목공예(기능사)	
일반종사원	직업상담사1,2급 간호사	
대민종사원	대형운전면허(운전종사자)	



직종	구분	등급	자격증
시설 정비 원	기계	기술사	공조냉동기계, 용접, 가스, 소방
		기능장	에너지관리, 용접, 배관, 가스
		기사	공조냉동기계, 용접, 에너지관리, 산업안전, 승강기, 가스, 소방설비(기계분야)
		산업기사	공조냉동기계, 용접, 배관, 에너지관리, 산업안전, 승강기, 기계정비, 가스, 생산자동화, 소방설비(기계)
		기능사	공조냉동기계, 에너지관리, 용접, 특수용접, 배관, 기계정비, 가스, 생산자동화, 굴삭기운전
	전기	기술사	전기안전, 건축전기설비, 소방
		기능장	전기
		기사	전기, 전기공사, 승강기, 소방설비(전기분야)
환경·에너지	기술사	가스, 수질관리	
	기능장	위험물, 가스	
산림자원	기술사	조경, 산림	
	기능사	산림, 조경, 식물보호, 위험물, 산업안전, 가스, 수질환경, 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태양광)	
일반토목	기술사	조경, 산림	
	기능사	조경, 산림, 식물보호	
건축	기술사	건설안전	
	기능장	토목, 건설안전	
정보통신	기술사	정보통신	
	기능장	전자기기	
정보통신	기술사	정보통신, 무선설비, 방송통신, 정보처리	
	기능사	정보통신, 통신선로, 무선설비, 방송통신, 정보처리	
정보통신	기술사	전자기기, 통신기기, 통신선로, 무선설비, 방송통신, 정보처리	
	기능사	전자기기, 통신기기, 통신선로, 무선설비, 방송통신, 정보처리	

〈붙임 4〉

□ 선임수당 지급 구분표

수당명	지급대상	지급방법
선임수당	가. 「전기사업법」에 따라 전기안전관리 담당자 및 보조원으로 선임된 사람 나. 「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라 위험물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사람 다. 「도시가스사업법」에 따라 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사람 라.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에 따라 안전관리책임자 및 안전관리원으로 선임된 사람 마.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 따라 검사대상기기조정자로 선임된 사람 바. 「대기환경보전법」 및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환경기술인으로 임명된 사람 사. 「하수도법」에 따라 기술관리인으로 선임된 사람 아.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에 따라 승강기의 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사람 자. 「수도법」에 따라 수도시설관리자로 임명된 사람	지급액 : 30,000원